##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96

발의연월일: 2025. 1. 22.

발 의 자:이원택・임미애・이병진

윤준병 • 주철현 • 임호선

송옥주 · 조계원 · 어기구

문대림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,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,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(이하 "배치기관 및 배치시설"이라 함)에 공중보건의사를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 병원 중 시·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 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제1 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·도지사가 정하는 병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5조의2(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  | 제5조의2(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      |  |  |
| 관 및 배치시설) ① 제5조제1  | 관 및 배치시설) ①            |  |  |
| 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부장관 또는 시・도지사가 공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와 같다.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1. ~ 4. (생 략)     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      |  |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5.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의 민간병원 중 시・도지사가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정하는 병원</u>          |  |  |
| <u>5.</u> (생 략)    | <u>6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 |  |  |
| ② (생 략)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|  |  |